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19-21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26. ~ 2019. 5. 10.(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신	831127-*****	017819000453000 0478	₩18,540,000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7길
2	채*현	650629-*****	017819000453000 0481	₩3,865,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3	조*주	790928-*****	017819000453000 0664	₩3,8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	강*희	740525-*****	017819000453000 0665	₩3,750,000	서울시 강서구 초원로
5	신*숙	630417-*****	017819000453000 0670	₩6,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6	신*숙	630417-*****	017819000453000 0671	₩3,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7	신*숙	630417-*****	017819000453000 0672	₩5,400,000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8	신*숙	630417-*****	017819000453000 0673	₩4,860,000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9	남*현	800725-*****	017819000453000 0706	₩3,1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71번길
10	홍*식	710901-*****	017819000453000 0679	₩3,750,00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97번길
11	이*철	831114-*****	017819000453000 0687	₩2,000,000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7길
12	김*숙	530615-*****	017819000453000 0690	₩3,750,0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13	정*하	810903-*****	017819000453000 0694	₩5,40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101번길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4	강*현	810501-*****	017819000453000 0857	₩3,000,000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10길
15	국*독서인재개발원	134921-*****	017819000453000 0868	₩3,000,000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6	김*현	590424-*****	017819000453000 0871	₩5,400,00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 나길
17	김*현	590424-*****	017819000453000 0872	₩10,800,00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 나길
18	박*홍	670509-*****	017819000453000 0861	₩1,500,000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19	박*준	590820-*****	017819000453000 0875	₩1,820,000	인천시 계양구 주부토로472번길
20	안*규	810208-*****	017819000453000 0874	₩1,000,00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1	윤*현	800301-*****	017819000453000 0860	₩1,5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22	임*화	780108-*****	017819000453000 0859	₩18,000,000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450번길
23	최*은	820726-*****	017819000453000 0190	₩3,862,500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174번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7, 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